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

해당되는 항목에 ☑표시 및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. [S17-001]

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, 이메일, 문자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.

※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.

1. 기본정보

☐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

성명 [회사(단체)명/대표자명]	주민등록번호 [사업자등록번호]	생년월일 ☐ 양력 ☐ 음력
		년 월 일

우편수령주소 ☐ 자택 ☐ 직장	연 락 처	직 장 정 보
주 소:	휴 대 폰: 이 메 일: 자택번호:	직 장 명: 부서, 직위: 전화번호:

☐ 동문	☐ 학부모	☐ 교직원
학과(특별과정): 입학년도(기수):	학생성명: 학부(과), 입학년도:	부 서: 직 위:

2. 약정정보

희망사용처	☐ 대학 중점사업에 사용되기를 희망 (대학에 위임) ☐ 단과대학(원), 학과, 연구소 등 기관명 [ ] ◯위임 ◯학술 ◯장학 ◯연구 ◯시설 ◯기타 [ ]
약정금액	☐ 정액후원 일금 ₩ 원 ☐ 일시납 년 월 일 ☐ 분할납 년 월 일 ~ 년 월 일 (회 분납)
	☐ 정기후원 매월 ₩ 원씩 년 월부터 정기자동이체
	※기부금 원금을 보존하여 발생하는 이자(과실금)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? ☐ 네 (원금보존) ☐ 아니오 (원금사용)
기금명칭	※약정액이 일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
기부동기	(남기고픈 말)

3. 납부방법 (택 1)

☐ 무통장 입금	☐ 자동이체(CMS)	☐ 신용카드	☐ 기타
예금주: 서울대발전기금 ◯ 농협 079-17-000136 ◯ 신한 100-014-328209 ◯ 우리 1006-601-280134	은 행 명: 계좌번호: 예 금 주: 이 체 일: ◯10일 ◯25일	카 드 명: 카드번호: 유효기간: 년 월 결 제 일: ◯10일 ◯25일	◯ 교직원 급여공제 ◯ 지로입금 용지를 보내드립니다. (지로번호 7514340) www.giro.or.kr

4.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

필 수 정 보	성명, 필수연락처, 필수주소, 약정금액, 납부방식(일시납, 분할납), 기금용도 지정, 기부금 원금 보존 여부, 무통장입금, 자동이체 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, 이체일), 신용카드(카드명, 카드번호, 유효기간), 지로입금, 교직원 급여공제	정보 수집 및 제공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선 택 정 보	동문(학부(과), 입학년도), 학부모(학생성명, 학생학부(과), 학생 입학년도), 교직원(부서), 기타, 우편물 수령주소 (자택, 직장), 생년월일, 이메일, 자택 전화번호, 직장 전화번호, 휴대폰 번호, 직장명, 부서, 직위	정보 수집 및 제공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고유식별정보	주민등록번호(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목적)	정보 수집 및 제공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정 보 제 공	기부금 납부 및 예우 · 모금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	정보 수집 및 제공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	자동이체, 신용카드 결제,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별도 기부자 예우 및 모금 통계	

※ **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근거** : [필수정보, 선택정보]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, [고유식별정보]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, 제208조의3,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, 법인세법 제112조의2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 · 보관 의무 준수

※ **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수증 및 예우품 발송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**

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.

년 월 일

약정인 (서명)

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
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(940동) 2층
T.02-880-8004 F.02-872-4149 MMS.1666-2930 URL.www.snu.or.kr E.snuf@snu.ac.kr

※ ARS 후원전화 060-700-8004 한 통화로 학교발전기금 5,000원이 적립됩니다. ※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.
※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개인은 세액공제, 법인은 연간 이익금액의 50% 내에서 손금 처리 가능)